

의안번호	제934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4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안지윤, 최정훈,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제안이유

-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미술진흥법」(2023.07.25. 제정, 2024.07.26.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 미술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련 사업 규정(안 제6조)
 - － 충청북도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 창작·전시,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안 제7조)
 -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미술진흥법」, 「미술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제 호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지원 사업

2. 미술 전시 지원 사업

3. 미술 창작,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

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미술진흥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화랑업”이란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미술품 경매업”이란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품 대여·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0.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11.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12. “미술 서비스업자”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기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 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 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7조(창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및 미술품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26.] [대통령령 제34709호, 2024. 7. 16., 제정]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의 창작·유통·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 작가, 미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미술 활동 및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공공미술품 현황에 관한 사항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 서비스업자
2.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미술 창작 관련 조사·연구·비평
2. 미술 창작 관련 기업의 육성
3.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 그 밖에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전시(미술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획·운영
2. 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의 대여
3. 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 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미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작공간등(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의 관

리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는 것

3. 그 밖에 창작공간등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공간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의 국제 미술전시 또는 미술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에 관한 사항
2. 미술품등의 해외 판매행사 및 마케팅 사업
3.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미술 창작 관련 국제교류
4. 해외의 미술 창작·유통·향유 현황에 관한 연구·조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의 조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2.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 등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기획·전시에 관한 국내외 주요 논의에 대한 연구·조사
2. 미술 창작·기획·전시에 관한 기술개발
3. 미술품의 유통·감정에 관한 기술개발
4. 미술품의 관리·보존 등에 관한 기술개발
5. 미술기록물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 관련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미술진흥 사업(안 제6조)
- 포상 등(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조례안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있으나 진흥계획 수립은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조례안 제6조(미술진흥 사업) 및 안 제8조(포상 등)의 경우 미술진흥 사업의 범위가 광범하며 사업 부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으로 사업 대상, 규모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어 대략적인 사업 규모의 추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